

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3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6. 13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일부개정(‘22. 4. 21.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-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 개정(2022.7.)에 따라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함(안 별표 1).
- 제13조, 제24조, 제25조의 “비품”을 “비소모품”으로 수정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2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에 따라 법률로 위임한 필수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(1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92조
- (2)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3. 4. 24. ~ 5. 15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, 제24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“비품”을 각각 “비소모품”으로 한다.

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(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등) 군수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) <u>비품</u>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의 소 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.</p> <p>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①물품출납 원은-----</p> <p>1.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. <u>비품출납</u> 및 운용카드 3. ----- 4. -----</p> <p>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<u>비품출납</u> 및 운용카드, --- -----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<u>비품출납</u> 및 운용카드에-----.</p> <p>제25조(장부의 작성)①<u>비품</u>관계 장표 를-----.</p> <p><신설></p>	<p>제13조(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) <u>비소모품</u>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 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의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.</p> <p>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①물품출납 원은-----</p> <p>1.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. <u>비소모품출납</u> 및 운용카드 3. ----- 4. -----</p> <p>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<u>비소모품출납</u> 및 운용카드, -----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<u>비소모품출납</u> 및 운용카드에-----.</p> <p>제25조(장부의 작성)①<u>비소모품</u>관 계 장표를-----.</p> <p>제 35조(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 야 한다.</p>

[별표 1]

물품의 품종·상태 구분(제5조 관련)

○ 물품의 종류

- (1) 비소모품 -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.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.
- (2) 소 모 품 -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소모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.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 부분이 되는 물품.

○ 품종구분 기준

- (1) 비소모품 -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. 다만,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할 수 있음.
②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
- (2) 소 모 품 -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(예 : 약품, 유류 등.)
②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 용기, 사무용 소모품, 공구 등.
③ 다른 물품을 수리·조립·제작(생산)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, 건축자재 등.
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(여러 개의 부분품으로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) 또는 진압장비, 의류, 핸드폰(휴대용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) 등. (다만, 무기 또는 탄약류는 제외)

○ 물품상태 분류기준

- (1) 신 품 -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
- (2) 중 고 품 -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
- (3) 수리필요품 -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
- (4) 폐 품 -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92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(행정안전부)

다. 소모품의 관리

1) 소모품 정의

-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
 -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, 유류 등
 -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, 사무용 소모품, 공구 등
 - 다른 물품을 수립·조립·제작(생산)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, 건축자재 등
 -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(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) 또는 진압장비, 의류, 핸드폰(휴대용으로 사용되어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) 등(단,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)

2) 비소모품 정의

-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
- 단,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

3) 소모품의 수불관리

-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, 희귀 소모품,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‘소모품대장’에 수불상황 기록관리
 - 보관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,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 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공무원이 관리

4) 유의사항

-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
 -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